##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5421

제안연월일: 2024. 11.

제 안 자:국회운영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연 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94호)	정부	2024.7.12.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8.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제418회국 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9.9.) 소위회부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30호)	이재강의원	2024.8.12.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4.9.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58호)	이재강의원	2024.8.13.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4.9.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2024.10.28.)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2024.10.31.)에서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사회단 체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8호 및 제19조의2 신설).
- 나.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고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 다.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 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 라.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 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 을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호 중 "협력"을 "협력 및 지원"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조금) 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강화할 목적으로 제19조제8호에 따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 력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①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둔다.
  - ② 국가인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3.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지원 및 관리
  - 4.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 5. 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국가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를 제49조의2로 한다.

제4장에 제49조의3 및 제4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 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49조의4(전자적 송달 등) ① 위원회(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따른 각종 문서의 송달 또는 통지(이하 "전자적 송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할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 방식으 로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전자적 송달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④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제2항에 따라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 ⑤ 전자적 송달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제19조(업무)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	8
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	
의 <u>협력</u>	- <u>협력 및 지원</u>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제19조의2(보조금) 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
	을 확대·강화할 목적으로 제 <u>1</u>
	9조제8호에 따른 인권의 옹호
	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
	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
<u>&lt;신 설&gt;</u>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① 인
	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
	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
	<u>을 둔다.</u>

- ② 국가인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 한 교육훈련
- 3.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지원 및 관리
- 4.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 한 연구
- 5. 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br/>③ 국가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
- 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 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 (현행 제50조와 같음)

제50조 (생략)

<신 설>

<신 설>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제30 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 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 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의4(전자적 송달 등) ① 위원회(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전산 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법 및 위원회 규칙에 따른 각종 문서의 송달 또는 통지(이하 "전자적 송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의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할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 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 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 적 방식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전자적 송달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④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제2항에 따라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 ⑤ 전자적 송달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